

「NH더하고나눔정기예금」상품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 품 명: NH더하고나눔정기예금

■ 상품특징 : 농업·농촌 및 사회공헌 관련 공익기금을 조성하는 가치소비형 금융상품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작성기준일 : 2024. 4. 24.)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개인, 법인(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외)		
상품유형	정기예금(큰만족실세예금)		
거래방법	■ 신규 : 영업점 ■ 해지 : 영업점, 비대면 채널(단, 법인은 영업점 해지만 가능)		
가입금액	3백만원 이상		
계약기간	1개월 이상 36개월 이내(월 또는 일 단위) ※ 가입기간 변경 불가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가입기간 동안 약정이자율로 계산하여 만기에 일시지급		
	월이자지급식 가입기간 동안 약정이자율로 계산한 총이자를 월수로 나눠 매월지급		
원금 또는 이자지급 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 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큰만족실세예금 계약기간별 기본이자율 적용

- ※ 농협인터넷뱅킹>금융상품몰>농협은행>예금금리안내>거치식
- ☞ 작성기준일 현재 기본이자율이며 실제적용이자율은 가입일의 고시이자율에 따름

기본이자율 (연%, 세전)

이자지급방식	가입대상	1개월 이상	37월 0상	67월 0상	127월0상	247월0상	36개월
만기일시지급식	개인	2.70	2.75	2.90	3.10	3.15	3.40
	법인	2.65	2.70	2.85	3.00	3.05	3.30
월이자지급식	개인	2.60	2.65	2.80	3.00	3.05	3.30
	법인	2.55	2.60	2.75	2.90	2.95	3.20

■ 큰만족실세예금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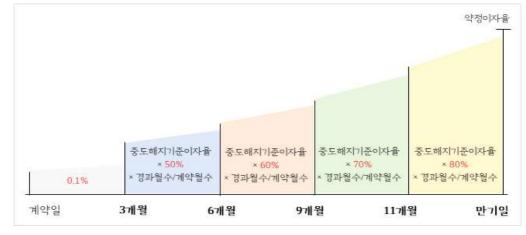
중도해지이자율 (연%, 세전)

경과기간	적용이자율/적용률
3개월 미만	0.1
6개월 미만	중도해지 기준이자율 × 50% × 경과월수 ÷ 계약월수
9개월 미만	중도해지 기준이자율 × 60% × 경과월수 ÷ 계약월수
11개월 미만	중도해지 기준이자율 × 70% × 경과월수 ÷ 계약월수
11개월 이상	중도해지 기준이자율 × 80% × 경과월수 : 계약월수

- 중도해지이자율 : 소수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 넷째자리에서 절사)
 - 중도해지 최저이자율은 0.1%
- 중도해지 기준이자율 : 예금가입일 당시 고시된 큰만족실세예금 기본이자율
- 경과월수는 계약월수를 초과할 수 없음, 월 미만 일수는 버림

■ 계산방법(예시)

중도해지이자율 산출근거



※ 위 그림은 중도해지기준이자율, 경과월수, 계약월수 등에 따른 중도해지이자율 산출방법을 보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실제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자율이 아닙니다.



만기후이자율 (연%, 세전)	만기후 3개월 이내 일반정기예금 계약기간별 기본이자율의 50%
	만기후 6개월 이내 일반정기예금 계약기간별 기본이자율의 20%
	만기후 6개월 초과 일반정기예금 계약기간별 기본이자율의 10%
	※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만기일 당시 농협은행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 만기 후 이자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 (단, 만기일 이후 이자율이 변동된 경우 변동일로부터는 변동된 만기 후 이자율 적용)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로 계산 한 금액 [이자계산 산식(예시)] 신규금액 × 약정이자율 × 약정개월수 ÷ 12
	상품신규일 • • • 만기일전일
만기이자 산출근거	
	신규금액 X 약정이자율 X 약정개월수 ÷ 12
	※ 위 그림은 만기해지이자 산출방법을 보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실제 적용되는 만기해지이자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금조성	연간평균잔액 0.01% 해당액을 농협은행이 기금으로 출연하여 농업·농촌 및 사회공헌 관련 사업용도로 지원
양도 및	양도 가능
담보제공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의 90% 범위 내에서 가능
부분인출	만기해지 포함 총 3회까지 가능 (단, 부분인출 후 잔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재예치	불가
추가적립	불가
계약해지방법	 ●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지 가능(법인은 영업점 해지만 가능) ● 만기자동해지 서비스 이용 가능 ● 계좌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중도 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단, 계약기간 1개월의 경우 만기일 전일까지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로 적용)
	(c, ii i i c i ii e i o i c i e c e i i i i i i e o i o z i i i i o i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자료열람 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및 출연	 ■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예금자보호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최고 5천만원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연계·제휴서비 스	해당사항 없음

3 유의 사항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자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기금 적립에 대한 내용은 상품 특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민원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banking.nonghyup.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 (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개발부서 : 개인고객부)



〈부록〉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압류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연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 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경과기간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